

『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1월 17일

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신 혜 련

나. 제안이유

-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음.
- 이를 위반한 자에게 「지역보건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 -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○ 부과대상(안 제3조)

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
-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
○ 과태료 부과기준(안 제4조)

-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
- 1차위반 : 40만원, 2차위반 : 100만원, 3차위반 : 300만원
(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 위반자 과태료 동일 적용)

○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(안 제6조)

- 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
- 과태료부과처분이 위법·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, 처분대상자에게 통지

○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(안 제7조)

-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하는 사람은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

○ 강제 징수(안 제8조)

-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

○ 경북도 보건위생과-2092(2006.1.16)호의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 과태료 처분관련 조례제정과 관련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제정안은

-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
-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·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, 부과 징수절차,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, 강제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를 정하였으며
- 부과기준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,
- 부과액은 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 1차위반 40만원, 2차위반 100만원, 3차위반 300만원으로 규정하였음
- 과태료 납부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,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

-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 제2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
- 안 제4조 내용 중 부과금액을 조례안 제12쪽 별표에 의거 1차위반 40만원, 2차위반 100만원, 3차위반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였음

- 과태료를 1, 2,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이 적정하게 조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